

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KOREA AEO www.customs.go.kr 대변인실 042-481-7616~7  OPEN OPEN 보도자료 www.customs.go.kr 대변인실 042-481-7616~7			
보도일시	11.15.(목) 12시 이후 보도(16일 조간용)		
배포일자	2018. 11. 15.(목)	담당부서	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
담당과장	이종욱 042-481-7810	담당자	최영훈 사무관 042-481-7857

전자상거래 수출, 신속하고 간편해진다

- 관세청, 전용 통관시스템 및 통관물류센터 신설 추진 등 종합 지원대책 발표 -

□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 및 새로운 수출경로로 부각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부터 통관, 배송,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‘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’을 발표했다.

○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수출통관 단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수출의 전체 단계에 걸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이번 대책에 반영하였다.

□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'16년부터 수입(해외직구)을 앞지르며 '17년 26.8억달러를 기록하였다.

*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규모 : 47.2억달러, 전자상거래 수입 20.4억달러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2018. 上	최근4년 증가율
e수출	6.2억달러	11.5억달러	20.8억달러	26.8억달러	15.7억달러	63.2%
e수입	14.9억달러	15.5억달러	17.3억달러	20.4억달러	12.1억달러	10.9%

○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결과,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, 일본, 미국, 싱가포르, 대만 순이다.

* 최근 3년간 수출증 국가 : 대만(399%), 베트남(298%), 필리핀(215%), 일본(188%), 인도네시아(122%) 순

○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, 화장품, 전기제품, 광학기기 순이며, 최근 3년간 수출 증품 품목은 귀금속(191%), 가족제품(135%), 완구류 및 운동기구(112%) 순이다. <※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·그래프 등 : 참고1 참조>

□ 관세행정 차원의 전자상거래 수출 주요 지원대책은 아래와 같다

○ (창업·입점 단계)*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 및 수출국의 통관절차·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및 e-mail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한다.

* 중기부,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업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대상 전문교육도 실시

○ (수출통관 단계) 소액·다(多)건, 주문 변경·취소 빈번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하여 간편한 수출신고 및 자유로운 신고 정정·취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**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하여 시행할 계획이다.

* 일반 수출통관 시스템과 독립되어 신고·정정·취하·배송연계 등이 가능한 통관물류 플랫폼

** 주문판매 정보 기반 수출신고서 및 품목분류번호(HS Code) 자동생성 기능 도입

○ (보관·배송 단계)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·통관·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‘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’건립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.

-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혁신하고,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, 대만,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*를 추진한다.

* 선박을 통한 운송물품에도 간이한 특송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세관당국간 합의가 필요

○ (반품·환급 단계) 반품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,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 및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.

-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,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
* 소액다품목 및 수출자와 제조자 상이 등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성으로 인해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 및 환급실적이 거의 없음

- 앞으로 관세청은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,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.

[보도자료 첨부물]

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활성화 지원대책 요약

1. 배 경

- 글로벌 전자상거래 교역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기 성장단계에서
- 새로운 수출경로를 창출하고 높은 고용창출 잠재력이 있는 개인·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

2. 추진 과제

[1] (창업판매) 전자상거래 수출 정보 및 교육 제공

- ①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정보 제공
- ② 중소수출기업(개인) 대상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교육 과정 협업
- ③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및 수입규제 정보 제공

[2] (수출통관)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 혁신

- ①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 시스템 구축
- ② 판매·배송 내역 기반 자동 수출신고 체계 구현
- ③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방법 및 항목 간소화
- ④ 품목분류(HS) DB 및 HS Code 자동생성 체계 구축
- ⑤ 수출통관 인증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

[3] (보관·배송) 보관·배송 등 물류비용 절감

- ①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구축
- ② 배송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 제도 신설
- ③ 일본·대만·홍콩 등으로 해상특송 제도 확대 추진

[4] (환급·반품) 세금 환급 및 반품 절차 간소화

- ① 국세청과 전산연계를 통한 세무신고(환급) 자동화
- ②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제조자의 관세환급 기반 확대
- ③ 반품 재수입 통관절차 간소화

3. 주요 추진과제

① (창업판매) 전자상거래 수출 유망정보 및 전문교육 제공

(1)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정보 정기 제공

□ (개 선) 세관 신고자료를 기초로 국가·품목(HSK 10단위)별 수출 증감율, 수출 급증감 국가·품목 등을 분석하여 분기별로 제공

① 관세청 홈페이지 무역통계 사이트에 ‘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’를 추가*하여 분기별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

* 무역통계 사이트 개편 : ① 일반 수출입, ② 남북교역, ③ 전자상거래 수출입(추가)

②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을 분석*하여 분기별로 e-Book 및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, 유관기관, 관련협회, 수출업체 등에 제공

*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협업 사업으로 추진

③ 정확한 통계 집계 및 분석을 위하여 현행 목록제출시 기재항목 및 세관 미신고 수출물품(우편배송)에 대한 개선방안 시행

< 전자상거래 수출 관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>

신고형태	일반신고	간이신고	목록신고	미신고(우편배송*)
통계집계	포함	포함	불포함	불포함
개선방안	통합 및 항목 축소	항목 추가**	우체국 기표지 정보 연계	

* 우편배송건 일부는 목록을 세관에 신고하나 상당수는 세관신고 없이 배송

** 품목분류번호,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

(2) 창업·중소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 교육과정 제공

□ (개 선) 개인·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동향, 통관·물류, 결제·환급·반품 등 전자상거래 수출 교육 프로그램 마련

① 중기부, 우정사업본부, 국세청, 특송·물류업체, 쇼핑몰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반기 1회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교육 실시

○ (정부부처 협업) 세관* 혹은 지방중기청별로 중기부, 우정본부,

국세청 등 정부기관, 쇼핑몰, 물류업체 전문가와 합동 교육

* (예) 본부세관별로 기재부, 한국은행 등과 합동으로 외환거래절차 교육

○ (협회·쇼핑몰 교육) 전자상거래수출협회, 대형 쇼핑몰 등과 협업을 통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통관·물류 전문가 파견

② 전자상거래 수출 초보자를 위한 통관·물류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세청, 유관기관,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*

*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동영상, e-book 형태로 제작·배포

③ 수출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1문 1답 형식의 자료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,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

(3)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및 수입규제 정보 제공

□ (개 선)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규제 정보를 취합·정리하여 제공

○ 관세청, 코트라, 외교부 등으로 이루어진 「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정보 분과」를 구성하여 수입 동향 및 규제정보 수집*

* 중기부 주관 「온라인수출 민관협의체」에 해외정보 분과 신설 건의

○ 관세관* 등 기관별 외교부 주재관과 코트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별 수입 규제정보 상시 입수체계 구축

* 8개국(미국, EU, 중국, 홍콩, 일본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태국) 12명

○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및 수입규제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시 및 수출 업체·개인에게 제공

○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애로 해소 및 수입규제 정보 입수를 관세관의 주요 임무에 추가하고 대사관, 코트라와 협력을 통한 신속해결 체계 구축

② (수출통관)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 혁신

(1)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 시스템 구축

- (개 선) 사용자의 편의성 및 활용관리 용이성을 극대화한 독립된 「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 시스템」 구축
 - (신고화면) 네이버 등 검색포털의 회원가입 화면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각 항목마다 도움말 기능 제공
 - (수출신고) 전산연계를 통해 판매 내역을 수출신고 내역으로 자동 변환하고 HS Code 등 최소 항목만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설계
 - (정정취하) 신고자가 세관방문 없이 직접 시스템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, 서류도 모두 표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편
 - (배송의뢰) 수출신고 내역을 표준 DB로 추출하고 운송사와 전산 연계하여 수출물품을 전산으로 배송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
 - (수출이행) 특송업체·우체국과 전산연계를 통해 발송정보로 수출 적재이행 등록(출항적하목록 제출)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

(2) 판매·배송내역 기반 자동 수출신고 체계 구축

- (개 선) 판매내역 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수출신고서를 생성하고 최소 항목*만 추가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
 - * 자동 변환된 수출신고서에 HS Code(품목분류번호) 항목만 추가 입력
- HS Code의 경우에도 자동 추출 및 선택 기능을 도입하여, 반복적으로 동일 물품 수출시에 수출신고서에 자동 입력되도록 설계
- 우정본부와 협의*를 통해 우체국 시스템에 입력하는 배송신청 정보가 수출신고서 및 적재이행 등록으로 자동 변환되는 시스템도 구축
 - * 관세청 수출신고서(항목)와 우체국 배송신청서(항목)의 일치 및 전산연계 추진

☞ 현재 상당수 수출신고(목록제출 포함)를 하지 않는 우편배송에 대해 배송 신청 정보와 수출신고를 자동 연계할 경우 수출 미신고 원천 차단 가능

※ 단계적으로 특송물품에 대해서도 자동 수출신고 기능 도입

(3)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방법 및 서식 간소화

①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 등록요건 완화

- (개 선) 공정위 협의를 통해 통신판매업 등록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세관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
 - 해외 쇼핑물 입점업체*의 경우 거래 혹은 입점사실 증빙시 통신 판매업 등록을 허용하도록 수출통관 관련 규정 정비
 - * 주문결제가 쇼핑물이 위치한 외국에서 이루어져 국내 에스프로 가입 불필요
 - 간이*수출신고 이용을 위해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등록시 일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
 - * 간이 수출신고(온라인수출업체만 가능) : 27개 항목, 일반 수출신고 : 57개 항목
 - 통관고유부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등록시 자동 발급되도록 개선

②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일원화 및 신고항목 간소화

- (개 선) 일반·간이 수출신고를 통합하고 목록제출*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출신고 항목을 통관목록 항목과 동일하게 재설계
 - 일반·간이 수출신고를 「전자상거래 수출신고」로 통합하고 신고항목을 현행 57개(일반)·27개(간이)에서 18개*로 대폭 축소
 -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간이한 '전자상거래수출신고'를 할 수 있도록 하되, 세관에 등록(전자상거래 수출업체)된 업체로 이용을 제한

<참 고>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신고서 항목 개편(안)

- 수출신고 항목 : 57개(일반), 27개(간이) → 18개(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통합)

연번	일반수출신고 항목(57개)	간이수출신고 항목(27개)	전자상거래수출 통합신고 항목(18개)	비 고
1	신고자	o	①신고자	
2	수출대행자	o	②수출대행자	
3	제조사	x		필요시 기재
4	구매자	x		필요시 기재
5	신고번호	o	③신고번호	
6	세관·과	o	④세관·과	
7	신고일자	o	⑤신고일자	
8	신고구분	o		
9	C/S 구분	x		
10	거래구분	o		
11	종류	x		
12	결제방법	o	⑥결제방법	
13	목적국	o	⑦목적국	
14	적재항	x		
15	선박회사(또는 항공사)	x		
16	선기명	x		
17	출항예정일자	x		
18	적재(예정)보세구역	x		
19	운송형태	x		
20	검사희망일	x		
21	물품소재지	x		
22	L/C번호	x		
23	물품상태	x		
24	사전입시개정통보여부	x		
25	반송사유	x		
26	환급신청인	o		
27	품명	x		
28	거래품명	o	⑧거래품명	
29	상표명	o		
30	모델·규격	o	⑨모델·규격	
31	성분	x		
32	수량	o	⑩수량	
33	단가	o	⑪단가	
34	금액	o	⑫금액	
35	세번부호	o	⑬세번부호	
36	순중량	o	⑭순중량	
37	수량	o	⑮수량	
38	신고가격	o	⑯신고가격	
39	송품장 부호	x		
40	수입신고번호	x		
41	원산지	x		
42	포장개수	x		
43	수출요건확인	x		
44	총중량	o	⑰총중량	
45	총포장개수	o		
46	총신고가격	o	⑱총신고가격	
47	운임	x		
48	보험료	x		
49	결제금액	x		
50	수입화물관리번호	x		
51	운송(신고)인	x		
52	세관기재란	o	세관기재란	세관에서 기재
53	컨테이너번호	x		
54	기간	x		
55	적재의무기간	o	적재의무 기간	배송정보로 같음
56	담당자	o	담당자	세관담당자 자동배부
57	신고수리일자	o	신고수리일자	전산시스템에서 자동생성

□ (개 선) 전자상거래수출 업체·개인이 시스템에서 직접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「HS Code 표준 DB 및 자동생성 체계」 구축

○ 전자상거래수출 물품의 품명을 입력하면 관련 HS Code가 표출되고 사용자가 선택하면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

<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분류(HS) 표준 DB 구축 >

- ◇ (개요) 그간의 통관자료를 분석하여 전자상거래수출 물품별로 사용비율에 따른 HS Code 및 핵심 분류기준을 담은 HS DB를 구성하여 제공
 - * (예) 티셔츠 → 6109.10-1000(사용비율:60%), 6109.90-1010(21%), 6109.90-9010(10%) 등
- ◇ (방안) 전자상거래수출 전용 통관시스템에서 품명을 입력하면 관련 HS DB가 표출되고, 적합한 HS Code를 선택하면 자동 입력되도록 구현
 - *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시스템 검색창에서 품명, 규격 등 최소 사항 입력시 HS Code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체계도 병행하여 구축

○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시스템을 통해 HS Code e-book*을 제작·제공하고, 품목분류 문의 코너를 마련하여 신속 답변

* 품목분류 난이도 및 오류율, 수출빈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품목 확대

(4) 수출신고 편의를 위한 HS Code 자동생성 체계 구축

(5) 수출통관 인증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관조회 시스템 구축

- (개 선) 해외구매자가 QR코드상의 통관정보를 모바일기기로 확인하고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
 - 배송물품의 운송장에 인쇄하는 QR코드에 핵심 통관정보와 조회번호*, 관세청 조회 사이트 주소 등을 포함
 - * 조회번호 : 수출신고번호 끝(7자리) + 인증번호(수출신고수리일자 6자리)
 - 관세청 홈페이지에 QR코드상의 조회번호를 이용하여 통관사실 여부 및 통관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- 수출통관 인증제는 위조상품 수출 등 불법행위 경력이 없는 성실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,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실시
 - 간담회, 언론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수출통관 인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강화

(6) 수출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양성화 유도

- (개 선) 국세청(세무신고), 무역금융기관(수출실적 인정), 우체국 등과 전산연계를 통해 저가신고·미신고 행위의 자발적인 차단을 유도
 - 국세청, 금융권 등과 전산연계를 통해 수출신고 자료를 기초로 부가세환급, 무역금융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*
 - * 세관 허위신고 및 미신고의 경우 세무신고 및 무역금융 신청에 어려움 가중
 - 우체국과 전산연계를 통해 판매자가 입력하는 배송의뢰 정보가 자동으로 수출신고서로 변환*되어 세관에 전송되도록 시스템화
 - * (1단계) 우체국 → (2단계) 특송업체로 확대 추진
 - 통관목록에 HS Code, 사업자등록번호(판매자)를 추가하고, 일반·간이 수출신고를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통합하고 신고항목 축소

③ (보관·배송) 물품의 보관·배송 비용 절감 지원

(1)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통관물류센터 구축

- (개 선) 중기부 협업 및 연구용역('19.상)을 거쳐 인천공항에 「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」를 구축하여 보관·통관·배송 원스톱 서비스 제공
 - (1단계) 인천공항 세관 지정장치장*에 전자상거래수출 물품 보관 및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주문 즉시 배송하는 시범사업 실시
 - *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인근 세관 지정장치장의 유휴공간 이용
 - (2단계) 「전자상거래수출 통관물류센터」를 구축하여 세관, 중소물류업체가 상주*하여 물품의 보관·재포장·통관·배송 일괄 처리
 - * 특송물류센터(전자상거래 수입)에도 세관 및 중소 특송업체들이 상주하여 업무 수행

(2)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 통관 지원

- (개 선) 다수의 신고 대상건을 하나의 B/L로 합하거나 일괄하여 수출신고 및 수출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시스템 개선
 - 1개 B/L로 통관발송되는 경우 수출이행(적재) 등록 시 1개 적하목록(배송정보)을 다수 수출자도 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
 - * 현재 House B/L 1건과 수출신고서 1건과 매치되도록 제도 및 시스템 운영

(3)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한 배송비용 절감

- (개 선) 업체가 우체국 발송시스템*을 통하여 우편발송을 의뢰하는 경우 발송내역을 토대로 수출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체계 구축
 - * 우체국과 계약체결 후, 우체국 계약고객시스템을 통하여 우편발송내역 입력
- 우정본부와 협의하여 해당 시스템을 통해 우편발송을 이용하는 경우, 발송량에 따라 요금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방안 협의

(5) 일본·대만·홍콩 등으로 해상특송 제도 확대

□ (개 선) 근거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수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관 협력*을 통해 해상특송 국가를 확대

* 양국간 과장급 실무협약('18) → 관세청장 회의 공식의제('19) → 협약 체결('19)

○ (1단계) 일본, 대만, 홍콩을 우선으로 특정 개항(예 : 부산 ↔ 후쿠오카) 간에 해상배송이 이루어지도록 세관당국간 협의 추진

* 일본과는 여객선을,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대만·홍콩과는 화물선을 이용

○ (2단계) 싱가포르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운송비용 경쟁력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

4 (반품·환급) 세금 환급 및 반품 절차 간소화

(1) 국세청과 전산연계로 세무신고·환급 증빙서류 간소화

□ (개 선) 전자상거래수출 세관 신고내역을 국세청과 연계하여 증빙 서류 첨부 없이도 수출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

○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수출신고내역을 국세청과 전산 연계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세무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화

○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세관의 수출신고 자료로 세무신고 증빙을 일원화하고 운송장 등 민간서류를 통한 증빙 허용범위를 제한

○ 수출신고 없이 특송업체·우체국이 제출하는 통관목록의 경우에도 수출실적 증빙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*

* 현재 수출신고 및 통관목록 제출도 하지 않는 미신고 우편배송물품의 경우에도 우체국과 배송의뢰 정보 전산연계를 통해 수출신고 및 수출실적 집계 시스템화

○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신고(환급)가 편리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개인 및 영세업체의 미신고 수출행위 근절을 유도

(2)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기반 확대

□ (개 선)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쉽고 편하게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시스템 개선을 추진

○ 관세환급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업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,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

* “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”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추진

○ 서류가 필요한 기존 절차*에서 제조자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제조자가 기입된 수출신고내역을 토대로 환급을 실시하는 체계 마련

* 수출물품 용도설명서, 송품장, 수출계약서 등이 필요

(3)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반품 통관절차 간소화

□ (개 선) 금액 및 사전등록 등 간이한 재수입 감면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반품에 대해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

○ 150\$ 미만 금액조건 및 수입자 사전등록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반품물품에 대해 간이한 재수입 면세 절차 적용

○ 수출업체가 재수입 감면 신청시 신청서에 수출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재수입 감면

○ 반품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상업서류 징구 없이 수입신고서 화면심사(P/L)로 업무처리

* 다만,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랜덤검사 실시 → 불법 적발시 P/L 배제

○ 수출건수에 비해 반복적인 반품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수출업체에 대해 사후 기업심사 등을 통해 위법·부당한 행위 적발·처벌